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6.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0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1 중 총계 “234”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5”로 하며,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3”을 “1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4”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을 “20”으로, 행정사무관 “83”을 “84”로,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3”을 “15”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0일”을 “2023년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설>	20의2. 처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신설>	20의3. 처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1. (생략)	21.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4</u>	<u>236</u>	+2
·	·	·	
·	·	·	
일반직 계	<u>233</u>	<u>235</u>	+2
·	·	·	
·	·	·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3</u>	<u>15</u>	+2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4</u>	<u>236</u>	+2
·	·	·	
·	·	·	
일반직 계	<u>233</u>	<u>235</u>	+2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1</u>	<u>20</u>	-1
·	·	·	
행정사무관	<u>83</u>	<u>84</u>	+1
행정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3</u>	<u>15</u>	+2
·	·	·	
·	·	·	